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제정 2017. 02. 18.

개정 2018. 01.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회칙 제 13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제 19조 [평의원 선출기준]에 의거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01 개정)

제2조(적용)

1. 평의원 의장, 임원, 감사의 선출에 적용한다. (2017.02 개정) (2018.01 개정)
2. 평의원 간사는 평의원 의장이 지명한다. (2018.01 개정)

제3조(평의원 선출)

1. 평의원 의장은 회칙에 의해 지역을 배분하여 평의원을 선출한다. (2017.02 개정)
2. 평의원 선출은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01 개정)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1. 구성 (2018.01 개정)

- ① 선관위는 투표 20일전 구성되어야 한다. (2018.01 개정)
- ② 선관위 구성은 평의원 의장, 간사, 방사분과 총무이사, 임상분과 총무이사로 하며, 위원장은 평의원의장이 된다.

2. 업무 (2018.01 개정)

-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회칙에 의해 선출되는 평의원 의장,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거에 따른 등록·홍보·투표·개표, 부정행위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8.01 개정)
- ② 선관위는 선거일 10일 이전에 해당 선거에 관련된 제반내용을 핵의학기술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거일 5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출마 회원의 입후보 취지 등을 홍보한다.
- ③ 선관위는 투개표에 따른 진행절차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의결 처리한다.
- ④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5조(후보자 자격 및 등록)

1. 선거에 입후보자는 회원의 의무를 필하여야 하며 신분상의 결격사항이 없어야 된다. (2018.01 개정)
2.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18 : 00까지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회칙에 의해 후보자격이 없는 자는 등록을 거부한다.
4. 후보자는 출마에 따른 구비서류(별표2.)와 홍보물을 선관위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회장, 부회장 후보자 출마 방식은 런닝메이트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2018.01 개정)
6.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신고한다.
7. 회장·부회장에 입후보자 중 한명의 후보자가 사퇴 시 후보등록은 무효가 된다.
(2018.01 개정)

제6조(부정행위금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는 자가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홍보물 이외 개별홍보물이나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또는 다른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홍보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금전수수행위 선거와 관련된 기타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한다.

제7조(선거운동) (2018.01 개정)

1.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③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제8조(선거방법)

1. 투표방법은 평의원이 직접투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는 투표소 설치를 하여야 한다. (2017.02 개정)
2. 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2017.02 개정)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2팀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017.02 개정)
4. 1팀일 경우 신임투표로 실시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2017.02 개정)
5. 2팀 이상일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다만, 2차 투표에서도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7.02 신설)

제9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별표3.)
2.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평의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10조(개표)

1.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선포하고, 선거인 명부에 의한 투표자 수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시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개표 종사자를 둔다.

제11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12조(선거확정) 이의 없이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는 평의원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즉시 당선자를 확정 발표하여야 한다. (2018.01 개정)

제13조(보궐선거) 회칙에 의해 보선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18.01 개정)

제14조(선관위 해산) 선거일 후 3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해산한다.

제15조(제재) 각급 선거후보자는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 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즉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은 회칙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며 불이행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비용) 선관위에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학회에서 총당한다. (2017.02 개정)

제4조 2017년 회장은 임상분과에서 하기로 한다. (단서 조항)

제5조 2020년부터는 회칙 및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경선을 실시한다.

제6조 2017년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평의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한다.
(2017.02 신설)

<별표1.> 선거인명부

순번	근무지	이름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표2.>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평의원회 의장 및 회장, 부회장 입후보등록 신청서

상기 본인들은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평의원 의장) 회장 및 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별첨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8.01 개정)

구 분	회장	부회장
성 명		
병원명		
생년월일		
핵의학 경력		
학 력		
포 상		

별 첨 : 1. 주요공약(PPT) --- 1부 (2018.01 개정)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별표3.> 투표용지

찬반 투표	
후보자 : 회장 000, 부회장 000	
찬성	
반대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인	

선출 투표

기호 1번 : 회장 000, 부회장 000	
기호 2번 : 회장 000, 부회장 000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인